Ⅲ 국내 현황

1. 정부의 지원

대규모 자연재해나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업무중단이 발생할 수 있는 경영환경에서 중소기업이 사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사업연속성계획(BCP)을 책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국내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위험이 빈번한 자연재해 발생,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한 휴업, 복잡해지는 사이버 위험 등 다양화·복잡화되고 있지만, 국내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9]은 인적·물적 자원 확보의 어려움과 재해 복구에 관한 체계적인 이해와 지식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비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사업연속성계획은 주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중소기업의 재난 사전예방과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연속성계획의 추진은 미진한 상태에 있다. 또한 위기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재무적 위험관리 수단으로써 보험의 활용도 부진한 상태에 있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기업휴지보험에 거의 가입하지 않고 있어, 운전자금에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에 있어 사업중단 위험은 사업의 존폐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국내의 법률이나 조례는 기업의 사업연속성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최소한의 제도적 근거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이나 재해로 인한 긴급사태에 대한 대응 부족으로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업중단 상황에서 생산의 복구가 지연되고 계약대로 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령 위반과 소송으로 인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이 사전에 사업연속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9) 2019년 중소기업벤처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중소기업은 기업 전체의 99.9%에 해당하고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전체 기업종사자의 82.7%로 나타남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업연속성계획의 지원에 대한 국내 법규 변천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7월에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기업재해경감법)[10]을 제정하였다. 동법의 제7조, 제19~23조는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을 통해 가산점, 보험료의 할인, 세제지원, 자금지원 우대, 재해경감 설비자금지원, 산업단지 입주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2008년 9월에 제정된 시행규칙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해경감 및 재난 대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그러나 동 법의 재해경감활동의 범위가 자연재난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업의 관심과 참여도가 저조함에 따라 정부는 2010년 동 법의 개정을 통해 재해경감활동의 범위를 자연재난을 포함한 전반적인 재난으로 확대하였다. 2010년 제정되고 2013년 개정된 「기업재난관리표준」[11]은 기업의 사업연속성 전략 수립, 대응 및 사업연속성확보계획에 필요한 주요 사항의 작성 및 고시를 규정하였다. 2011년 제정·시행된 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기준은 기업이 효율적으로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실행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 재난관리표준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와 원칙 등의 수립기준을 제공하였다.

또한 정부는 2004년 6월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2017년 동 법을 개정하여 법에서 정한 해당 기관(공공기관)에 대해 기능연속성계획(COOP)[12]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됨에 따라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민간기관 및 단체에게도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기 위해 2022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일부 개

10) 동 법은 소방방재청 소관으로 2008년 시행되어 2011년에 개정되었으며, 자연재난 발생 시 기업 활동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동 법의 주요 내용은 ① 총칙, ② 재난관리표준, ③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④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⑤ 재해경감활동 기반조성, ⑥ 보칙으로 이루어져 있음

11) 기업재난관리표준은 재해경감활동 조직·체계 등의 구성, 재해경감활동 관계 법령 준수·절차 및 이행, 위험요소의 식별, 위험평가, 영향분석 등 재난 위험요소의 경감, 자원관리 및 기업과 재해경감 관련 단체와의 협정, 재해경감을 위한 전략계획, 경감계획, 사업연속성확보계획, 대응계획 및 복구계획의 수립,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지시·통제·협의조정 등 비상시 의사소통 및 상황전파 체계, 교육·훈련을 통한 자체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12) 기능연속성계획(Continuity Of Operation Plan; COOP)은 재난 발생 시 국가의 주요 기능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난관리 활동으로 주로 공공기관의 업무중단에 대비하여 기관의 핵심기능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연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수립하는 계획임

정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민간단체를 포함) 및 민간업체도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표 Ⅲ-1〉 참조).

그 외에도 정부는 2000년대 이후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2020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대유행할 우려가 발생할 경우에 긴급 대응체계 매뉴얼인 업무지속계획 표준안을 제작·배포하여 기업의 사업연속성관리에 참고하도록 제공해 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009년 9월, 당시 노동부·보건복지가족부·질병관리본부는 공동으로 「2009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사업장 업무지속계획(BCP) 수립 매뉴얼」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동 매뉴얼은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대유행(Pandemic Influenza; PI) 상황에 대비하여, 기업 경영유지 및 업무지속을 위한 대비·대응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제작되었다. 동 매뉴얼에서는 ①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체계 조직, ② 주요 사업 활동 지속 방안(BCP), ③ 기업 내 감염관리, ④ 직장 내 인플루엔자 환자 발생 시 대처법, ⑤ 직원 여행 및 출장 등과 관련한 절차·방안들을 포함하였다. 2015년 6월, 고용노동부는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에 의한 호흡기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기업 대응지침을 발표하였다. 동 지침은 ① 기업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소속 직원의 메르스 발생 동향 파악에 철저를 기할 것, ② 메르스(MERS) 환자(격리대상자 포함)가 발생하면, 즉시 적절한 격리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 ③ 보건관리자 등 보건업무 담당자는 본 지침 내용을 소속 직원에게 철저히 교육하고 이행 상태를 파악·관리할 것, ④ 기업 차원에서 경영유지 및 업무지속을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대비·대응계획을 수립할 것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2020년 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경보단계 격상(심각)에 따른 기업별 업무지속계획(BCP)」 가동요청을 발표[13]하면서 「감염병 발생 시 기업 업무지속계획 표준안」을 배포하였다. 동 표준안은 감염병 발생 시 기업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의 표준을 규정한 것으로 ① 감염병 대비·대응체계 조직, ② 업무지속 방안, ③ 기업 내 감염관리, ④ 직장 내 감염병 환자 발생 시 대처법을 안내하고 상기의 사항을 업무지속계획 점검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2020년 4월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감염병 등 위기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복구하기 위해 「감염병 발생

13) 산업통상자원부(2020. 1. 30)

시 기업의 업무연속성계획 가이드라인」 2판을 개정하여 발간하였으며, 특히 기업 규모가 작거나 신속히 사업연속성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축약본을 별도로 마련하여 함께 배포하였다. 이후, 2022년 1월에는 업무연속성계획(BCP) 가이드라인 3판 개정본이 발간되었으며 개정된 「업무연속성계획 가이드라인」은 체크리스트와 작성양식, 예시 등을 통해 기업이 스스로 사업연속성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었다. 개정된 사업연속성계획(BCP)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① 비상조직체계 구성 및 역할분담, ② 기업의 핵심 기능 분석, ③ 연락망 구축 및 소통계획 수립, ④ 감염병 발생 상황에서의 대응방법 숙지, ⑤ 복구 계획 수립으로 구성된다.

2022년 1월,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공동으로 「감염병 발생 대비 사업장 업무연속성계획(BCP)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확진자와 접촉자가 폭증하여 인력·물자의 이동 제한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핵심업무 지속을 위한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권고사항을 포함하며 ① 비상조직체계 구성 및 역할분담, ② 사업장 핵심업무 정의 및 연속성계획 수립, ③ 가용자원 현황 파악, ④ 인력운영 방안 마련, ⑤ 소통 체계 구축, ⑥ 사업장 내 확산 방지조치, ⑦ 복구 등 사후조치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 3월,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규모 사업장 기능연속성계획(BCP) 수립 가이드」를 제작·배포하였다. 동 가이드는 총 7단계로 구성되며, (1단계) 사업의 우선순위 파악, (2단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위험성 분석, (3단계) 사업 피해 최소화(감염병 확산 전), (4단계) 분야별 대응조치(감염병 확산 시), (5단계)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6단계) 기능연속성계획의 공유, (7단계) 기능연속성계획의 점검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양한 법적 제도의 도입과 가이드라인의 보급을 통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중소기업의 사업연속성계획은 제대로 수립되지 않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사업연속성계획에 대한 지침이나 프로세스가 존재하더라도 평상시에 재난 대비 훈련 등의 활동은 미흡한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재난이나 감염병 등 위기 상황 때마다 긴급대응체계 매뉴얼을 배포해 왔으며, 이에 대한 법조항이 존재하고 있지만 위반 시 제재나 처벌조항이 없고 기업의 재난관리표준 준수나 사업연속성계획의 수립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존재한다.

〈표 Ⅲ-1〉 국내 (중소)기업 사업연속성계획(BCP) 관련 법제 현황

법령	제·개정 배경	주요 내용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007. 7. 19 제정, 2008. 1. 20 시행)	• 민간기업이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맞는 기업 재난 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해경감 및 재난 대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재해경감 활동관리체계 구축, 운영 및 실행, 교육과 훈련, 감시 및 검토, 유지 관리 및 지속적 개선 등의 표준화된 절차와 원칙 규정 • 재난관리표준의 제정·운영, 재해경감 활동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절차 마련 • 재해경감 우수기업에는 재난 관련 보험 요율 할인, 세제지원, 자금지원 우대 등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010. 3. 31 일부개정)	• 재해경감활동의 범위가 자연재난으로 한정되어 기업의 관심과 참여도가 저조함	• 재해경감 활동 범위를 자연재난을 포함한 전반적인 재난으로 확대
기업재난관리표준 (2010. 4. 2 제정)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업재난관리표준 체계, 재해경감 활동계획 수립, 교육과 훈련, 재해경감활동 평가 및 관리 등을 위한 「기업 재난관리표준」을 제정함	•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구축, 운영 및 실행, 교육과 훈련, 검토, 유지 관리 등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와 원칙 규정 • 국·내외 참고 표준규범 제시
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기준 (2011. 3. 24 제정)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기업이 효과적으로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실행·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재난관리표준에 따른 세부절차, 원칙 수립기준을 제공함	• 재해경감을 위한 전략계획, 경감계획, 사업연속성확보계획, 대응계획 및 복구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 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기준 체계, 재해경감활동, 교육과 훈련, 재해경감활동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04. 3. 11 제정)	•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하여 재난 대응관리체계를 확립함	• 전반적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 개발·보급 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7. 1. 17 일부개정)	• 국가기반시설 보호관리 체계·재난복구계획수립 체계를 보완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에서 해당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이하, '기능연속성계획'이라 함) 수립·시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22. 1. 4 일부개정)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은행, 통신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영역의 업무가 마비·지연되었음. 이에 따라 민간업체에도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음	•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도 재난 상황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민간단체 포함) 및 민간업체도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의무화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표 Ⅲ-2〉 정부 부처의 기업 사업연속성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현황

기관	일자	명칭	주요 내용
노동부·보건복지가족부·질병관리본부	2009년 9월	2009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사업장 업무지속계획(BCP) 수립 매뉴얼	•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A(H1N1) 대유행 상황에 대비하여, 기업 경영유지 및 업무지속을 위한 대비·대응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작됨 • 주요 내용은 ①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체계 조직, ② 주요 사업 활동 지속 방안(BCP), ③ 기업 내 감염관리, ④ 직장 내 인플루엔자 환자 발생 시 대처법, ⑤ 직원 여행 및 출장 등과 관련한 절차·방안임
고용노동부	2015년 6월	메르스(MERS)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기업 대응 지침	•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에 의한 호흡기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기업 대응지침을 발표함 • 지침 기본방향은 ① 기업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소속 직원의 메르스 발생 동향 파악, ② 메르스(MERS) 환자 발생 시 격리 조치, ③ 보건업무 담당자의 본 지침 내용을 소속직원에게 철저히 교육 및 이행 상태를 파악·관리, ④ 기업 차원에서 경영유지 및 업무지속을 위한 전담부서 지정 및 대비·대응계획 수립 등임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1월	감염병 발생 시 기업 업무지속계획 표준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경보단계 격상(심각)에 따른 기업별 업무지속계획(BCP)」 가동요청을 발표하고 「감염병 발생 시 기업 업무지속계획 표준안」을 배포함 • 동 표준안은 감염병 발생 시 기업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의 표준을 규정한 것으로 ① 감염병 대비·대응 체계 조직, ② 업무지속 방안, ③ 기업 내 감염관리, ④ 직장 내 감염병 환자 발생 시 대처법을 안내함
	2020년 4월 (2차 개정)	감염병 발생 시 기업의 업무연속성계획 가이드라인	• 기업이 사업연속성계획을 준비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BCP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및 작성양식 샘플을 제시함 • 특히 기업 규모가 작거나 신속히 BCP 수립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축약본'을 별도로 마련하여 함께 배포함
	2022년 1월 (3차 개정)	감염병 발생 시 기업의 업무연속성계획 가이드라인	• 개정된 「업무연속성계획 가이드라인」은 체크리스트와 작성양식, 예시 등을 통해 기업이 스스로 BCP를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함 • 가이드라인은 ① 비상조직체계 구성 및 역할분담, ② 기업의 핵심 기능 분석, ③ 연락망 구축 및 소통계획 수립, ④ 감염병 발생 상황에서의 대응방법 숙지, ⑤ 복구 계획 수립으로 구성됨

〈표 Ⅲ-2〉 계속

기관	일자	명칭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	2022년 1월	감염병 발생 대비 사업장 업무연속성계획(BCP) 작성 가이드라인	•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확진자와 접촉자가 폭증하여 인력·물자의 이동 제한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핵심업무 지속을 위한 계획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권고사항임 • 주요 내용은 ①비상조직체계 구성 및 역할분담, ②사업장 핵심업무 정의 및 연속성계획 수립, ③가용자원 현황 파악, ④인력운영 방안 마련, ⑤소통 체계 구축, ⑥사업장 내 확산 방지조치, ⑦복구 등 사후조치임
고용노동부	2022년 3월	중소규모 사업장 기능연속성계획(BCP) 수립 가이드	• BCP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규모 사업장이 쉽게 따라하면서 BCP를 수립할 수 있도록 중소규모 사업장용 가이드를 제작함 • 동 가이드는 총 7단계로 구성되며, (1단계) 사업의 우선순위 파악, (2단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위험성 분석, (3단계) 사업 피해 최소화(감염병 확산 전), (4단계) 분야별 대응 조치(감염병 확산 시), (5단계)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6단계) 기능연속성계획의 공유, (7단계) 기능연속성계획의 점검임

자료: 고용노동부 알림자료(2015. 6. 9), “메르스(MERS)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기업 대응 지침”; 고용노동부 알림자료(2022. 1. 28), “감염병 발생 대비 사업장 업무연속성계획(BCP) 작성 등 가이드라인 배포”; 산업통상자원부, 「감염병 발생 시 기업 업무지속계획 표준안」

기업재해경감법의 제7조 및 제19~23조는 국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우수기업인증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해 왔다.[14] 국내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KS-BCM)를 살펴보면,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인증 등’에 따라 중단적 사고에 대한 대처, 손실 가능성의 축소, 각종 대응 및 사업의 원상회복을 위해 문서화된 경영시스템 수립, 실행, 운영, 모니터링 및 지속적인 개선활동에 관해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에서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행하는 제도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개에 불과했던 재해경감 인증 우수기관(KS-BCM)은 2019년 10개를 기록한 뒤 2020년 159개, 2021년 224개, 2022년 2월(누적) 250개로 급증하였다.[15] 2022년 2월 기준 약 250개의 재해경감활동

14) 기업재해경감법 제7조는 재해경감활동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 제19조는 우수기업에 대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심사하는 경우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시설공사·용역 등의 사업에 대한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 가산점 부여, 제20조는 보험료의 할인, 제21조는 세제지원, 제22조는 자금지원 우대, 제23조는 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의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15)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2. 2. 21),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현황 공고(행정안전부 제2022-187호)”

인증 우수기관 중 대다수는 도로공사, 공항공사, 항만공사, 시설관리공단 등과 같은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며, 중소·중견기업은 약 22개로 전체의 약 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국내에서 중소기업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 활용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향후 동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사업연속성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Ⅲ-1〉 재해경감 인증 우수기업 및 재해경감 활동 인증기업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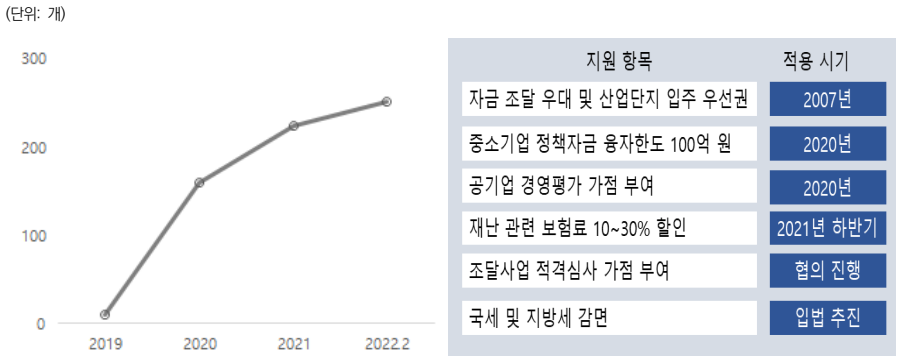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0-781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공고」; 서울경제(2021. 5. 9), "'기업 재난관리' 첨병으로 부상한 재해경감활동(BCM) 인증제"

2. 보험제도

중소기업의 사업연속성강화에 있어 중요한 재무적 위험관리(Risk Finance)의 수단이 되는 보험상품의 제공에 대해 국내 보험회사들은 정부의 사업연속성계획 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기업들의 업무중단 시 사업의 재개에 필요한 자금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사업중단 위험관리를 위한 재무적 수단으로 기업휴지보험[16] 가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국내 기업휴지보험은 주로 화재보험의 보통약관에 기업휴지손해 담보를 특약으로 추가하는 방식이나 재산종합보험에서 재물손해, 배상책임 등과 함께 담보되고 있다. 주로 중소기업들이 가입하는 화재보험의 기업휴지손

16) 화재나 폭발 등 담보 위험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영업이익과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경상비와 같은 휴업손실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주로 업무중단의 원인을 화재, 폭발, 지진, 노동쟁의, 전산설비의 장애 등과 같은 위험으로 한정하며 감염병으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은 면책사항으로 함

해 담보특약은 화재, 폭발, 풍수해, 노동쟁의 등에 의한 영업중단 손해를 보상하며, 대규모 기업들이 가입하는 재산종합보험은 전 위험(All Risk) 담보 방식을 통해 화재, 낙뢰, 폭발, 풍수해, 지진, 도난, 파손 등으로 인한 기업휴지손실을 보상한다. 또한 재산종합보험은 동맹파업, 폭동 및 소요와 같은 위험도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담보하고 있다.[17] 그러나 이와 같이 국내 보험회사들이 제공하는 기업휴지보험상품은 독립된 보험 종목이 아니라 특정 상품 내 하나의 담보 위험이나 특약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입대상이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고 중소기업의 가입실적은 미미한 상태이다.

중소기업벤처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는 688만 8,435개 업체로 전체 기업의 99.9%이다. 중소기업이 고용한 종업원 수는 1,744만 명으로 전체 기업종사자의 82.7%를 고용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매출액은 2조 538억 원으로 전체 기업 매출액의 4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의 사업연속성 계획과 관련하여 2020년 매출액 대비 손해보험료 비율인 위험 전가 비율은 전 산업 평균이 0.37% 정도로 미국 기업의 1/3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3〉 참조). 이는 현재 국내 중소기업들이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파급효과인 기업휴지손해를 포함하는 간접손해 등의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2020년 국내에서 기업휴지보험의 계약 건수는 6,300건으로 전체 활동기업 수 688만 개와 대비하여 가입률이 약 0.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4〉 참조). 이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화재보험을 통해 물적 손해는 회복하더라도 사업중단에 따른 기업휴지손해에 대한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17) 국내 기업휴지보험상품의 약관체계, 담보내용, 보험요율 적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이기형·한상용(2009)를 참고하기 바람

〈표 Ⅲ-3〉 기업의 업종별 위험 전가 비율 현황

(단위: %)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 전체	
	2020	2017~2020 증가율	2020	2017~2020 증가율	2020	2017~2020 증가율
전(全) 산업	0.0778	8.34	0.3753	4.90	0.2089	6.96
농업	0.0323	-13.24	0.3499	6.62	0.3000	6.08
어업	0.0325	4.33	0.3512	3.85	0.2135	10.39
광업	0.0607	10.75	0.5181	-1.53	0.3941	0.01
제조업	0.0580	7.50	0.3006	6.36	0.1402	8.05
비제조업	0.0994	8.55	0.4137	4.22	0.2632	6.03
전기가스업	0.0141	-3.24	0.8654	25.32	0.0346	13.95
건설업	0.0778	3.41	0.3699	6.70	0.2457	6.82
하수폐기물처리업	0.1176	8.02	0.7551	-0.06	0.6692	1.35
도소매업	0.0789	6.37	0.2750	5.74	0.1925	5.85
운수창고업	0.0449	10.86	0.5097	-0.14	0.2406	4.94
숙박음식점업	0.1742	6.54	0.8824	11.21	0.4732	11.34
정보통신업	0.1322	3.46	0.5386	5.50	0.2709	6.64
부동산업	0.0668	14.33	0.2391	3.21	0.1668	8.95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0.1477	12.63	0.8378	4.28	0.6359	3.17
사업시설관리업	0.9863	12.92	1.2185	-2.64	1.1336	1.36
교육서비스업	0.1968	2.10	0.8893	10.06	0.6480	9.18
예술스포츠업	0.0780	28.53	0.6653	7.36	0.3408	27.58

주: 위험 전가 비율은 기업의 매출액 대비 손해보험료 비율로 정의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기업경영분석

〈표 Ⅲ-4〉 재산종합보험 연도별·담보별 계약 현황

(단위: 천 건, 억 원, %)

구분	계약 건수			원수보험료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재물손해	155.7	166.7	161.7	7,562	7,508	7,754
	(59.6)	(56.8)	(60.5)	(70.1)	(70.3)	(70.8)
기계손해	32.3	27.4	16.2	737	701	717
	(12.4)	(9.3)	(6.1)	(6.8)	(6.6)	(6.5)
기업휴지손해	8.4	8.6	6.3	1,476	1,338	1,355
	(3.2)	(2.9)	(2.4)	(13.7)	(12.5)	(12.4)
배상책임손해	64.9	90.7	83.0	1,012	1,127	1,133
	(24.8)	(30.9)	(31.1)	(9.4)	(10.6)	(10.3)
합계	261.5	293.4	267.2	10,787	10,673	10,959
	(100)	(100)	(100)	(100)	(100)	(100)

주: 괄호는 구성비임

자료: 보험개발원(2021. 9)

이와 같이 중소기업의 사업연속성계획관리에 있어 기업휴지보험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경영자들의 인식 부족뿐 아니라 국내 보험회사들이 사업중단 위험의 관리를 위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지 못한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이기형 2011). 송윤아·한성원(2020)의 연구에 의하면 국내 기업이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위험 순위에서 기업휴지 위험은 조사 대상 15개의 위험 중 9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휴지로 인한 사업중단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영업중단(기업휴지) 위험을 줄이기 위한 관리 방안으로 보험 또는 공제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8.1%, 아무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응답은 43.6%로 나타나 국내 기업들의 사업연속성관리에 문제점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그림 Ⅲ-2〉 위험유형별 발생 가능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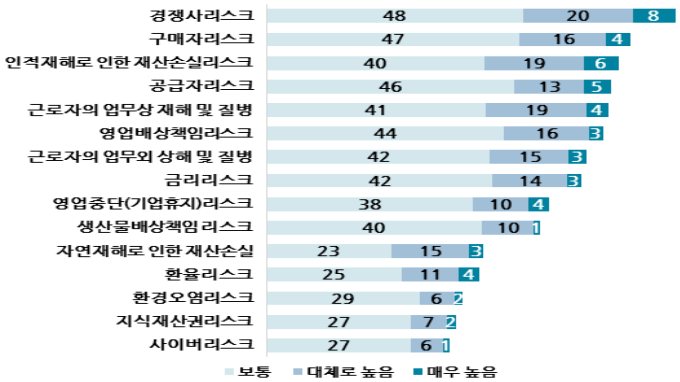

주: 1) "귀사의 기업활동에 다음과 같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2) 답변이 대체로 또는 매우 높음이면 높음임

자료: 송윤아·한성원(2020)

〈표 Ⅲ-5〉 위험유형별 관리 기법

(단위: %)

구분	손실발생 가능성 줄이기	준비금 적립	보험·공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음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손실	28.0	3.5	30.7	35.0
인적재해로 인한 재산손실	31.8	3.3	39.2	24.6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	32.4	3.0	50.1	17.2
근로자의 업무외 상해 및 질병	29.2	2.9	40.1	24.6
영업배상책임리스크	30.9	2.7	35.6	24.6
생산물배상책임리스크	28.2	2.4	22.9	37.4
환경오염리스크	29.4	1.9	8.9	47.6
영업중단(기업휴지)리스크	30.6	3.3	8.1	43.6
사이버리스크	29.0	1.2	5.1	49.9
지식재산권 리스크	29.4	1.3	5.8	47.7
금리리스크	27.2	4.2	4.5	46.5
환율리스크	26.1	2.3	4.7	50.5
공급자리스크	32.5	2.5	7.0	41.0
구매자리스크	32.0	2.4	7.2	39.2
경쟁사리스크	31.9	2.1	4.7	40.7

주: '귀사는 다음과 같은 리스크를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으십니까?(복수응답 가능)'에 대한 응답임

자료: 송윤아·한성원(2020)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기형·한상용(2009) 연구는 국내 기업들의 기업휴지보험의 인식에 대하여 설문조사[18]를 실시하였다. 먼저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기업들의 보험가입 이유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기업휴지 위험관리 필요성을 인식,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요청, 기업휴지손실을 이전에 경험, 기업의 운영자금 대출 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요청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들이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 낮은 기업휴지손실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 인식, 높은 보험료의 부과, 상품의 복잡성, 기업 내부적으로 자체적인 위험관리, 보험회사의 엄격한 보험가입심사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내 기업 경영자들의 위험관리에 대한 낮은 인식과 위험관리를 위한 기업휴지보험 가입을 기업의 사업연속성 확보를 위한 투자로 인식하지 않고 소멸성 비용으로 인식하는 데 기인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또한 동 연구는 향후 국내 기업들의 기업휴지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높은 보험료의 인하, 기업의 종합적 위험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제공,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18) 동 설문은 보험회사의 기업휴지보험 담당 부서에 자사의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하는 방법과 상장회사에 우편발송 방식을 사용하여 총 73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음